



규정
소수집단학생지원 규정

문서번호	TWP-A511		
제정일자	2015. 09. 15.		
개정일자	2020. 07. 21.		
개정번호	1	페이지	1/3

목 차

- 제1조 목적
- 제2조 정의
- 제3조 구성
- 제4조 지원 및 기능
- 제5조 지원업무 담당자 교육
- 제6조 장학금 지급
- 제7조 회의
- 제8조 보칙

부칙

작성부서	교무학생처	제정일자	2015. 09. 15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승 인
직 책	담 당			교무학생처장	기획예산처장	총 장
서 명		/				
일 자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511	
		제정일자	2015. 09. 15.	
	소수집단학생지원 규정	개정일자	2020. 07. 21	
		개정번호	페이지	3/3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인 소수집단학생에게 필요한 교수·학습·시설·설비 등을 지원하여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0.07.21>

제2조(정의) 소수집단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원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.<개정 2020.07.21>

1. 장애학생
2. 외국인 유학생
3. 다문화가족 학생
4.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학생

제3조(구성) 소수집단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지원을 위하여 본교 교무학생처 내 소수집단학생 지원 담당자를 둔다.<개정 2020.07.21>

제4조(지원 및 기능) 소수집단학생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20.07.21>

1. 소수집단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
2. 소수집단 학생의 학사 및 진로, 취업상담에 관한 사항
3. 소수집단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4. 기타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원업무 담당자 교육) 소수집단 학생지원업무 담당자는 소수집단 학생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개정 2020.07.21>

제6조(장학금 지급) 소수집단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20.07.21>

제7조(회의) 소수집단 학생의 지원 및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요청이 있을 때는 학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개정 2020.07.21>

제8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제반 규정이나 총장의 승인 받아 시행한다.<개정 2020.07.21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